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6. 17.(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34차 및 제3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36-165)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엘지헬로비전, 브로드밴드노원(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한다’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역채널과 관련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LG헬로비전은 권역별 지역채널 및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LG헬로비전은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법규정은 방송법, 공직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되겠습니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역채널 자체제작 계획에는 방송구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관련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방송구역별로 시청자, 시청자 단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 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LG헬로비전은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을 포함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계약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입니다. 또한 LG헬로비전은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계열PP, 종편·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변경승인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투명성 확보계획과 관련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푸른방송은 사외이사 임명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 및 실질적 운영, 이것이 포함된 경영 투명성 확보 이행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강방송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감사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허가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성 관련해서 LG헬로비전은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채널 관련해서는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은 지역채널의 시청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편성시간을 유지하는 한편, 재방송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협력업체 상생과 관련된 권고사항으로 LG헬로비전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경영투명성 관련해서 금강방송은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을 일정횟수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은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은 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요금 감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브로드밴드노원·푸른방송·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20년 1월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8일에서 9일 이틀 동안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대상사업자 모두 과기정통부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미디어·법률·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약식심사위원회에서 재허가 신청서 및 과기정통부 조건(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재허가 동의하되 재허가 조건을 추가하고 일부 수정하며, 권고사항을 부과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기간 중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개요입니다. LG헬로비전의 송구영 대표는 뉴스/시사보도 콘텐츠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을 통해 지역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와 노동조합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일부 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있다는 판단을 심사위원회가 했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LG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광역화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채널별 독립적 콘텐츠 제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SKB 때 심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LG헬로비전의 협력업체 종사자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박스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조건 및 권고사항은 최소한의 규제로 SO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PTV와의 M&A라는 측면에서 LG헬로비전이 SKB와 유사함을 고려할 때, SKB 합병 시 부가된 사항 중에서 LG헬로비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동일하게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방송 관련해서 LG헬로비전이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LG헬로비전이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지역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LG헬로비전의 경우 다른 MSO 재허가 시 공통으로 부가된 조건을 동일하게 부가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관련해서 LG헬로비전은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채널 광역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같이 담고자 합니다. 한편, LG헬로비전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및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의 변경허가 조건과 이번 재허가 조건 간의 적용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조건(안)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LG헬로비전 등 4개사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으로 방통위의 올해 세 번째 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건인데, 올해 세 번의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방송법상 SO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번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부과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민주적이고, 또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내부에 건강한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소지역 개별 SO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SO 등에서 이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때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직원과 또 심사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4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안건에 찬성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실무진이 사전동의 건을 충실히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방송에 관한 실질적인 주무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봐야 할 부분을 충실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채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건 수정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자 위원회의 시청자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한 것,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조치들을 하도록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O 재허가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한 근본 취지에 아주 합당하게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심사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약식심사이고, 또 기간도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조건안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를 넘어서 꼭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역채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업체에서는 명심해서 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특히 LG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거대 유선방송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전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지만 심결서에 2가지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허가 조건 '부가'가 맞습니까, '부과'가 맞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부가'가 맞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부가?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加(더할 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加(더할 가)를 쓴다고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데 이 앞에서는 '부과'라고 쓰고 '부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페이지 '권고사항 부과 취지', 6페이지 무엇무엇 사항은 '동일하게 부가한다'고 해서 6페이지에 보면 전부 부가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부가'는 주된 것에 다시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add 한다는 의미이고, '부과'는 세금이나 책임, 임무를 부담케 한다는 뜻입니다. 임포즈(impose)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나 재승인은 특허의 연장입니다. 즉, 사업면허를 연장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 있어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 이행 여부는 중요한 평가사항이고, 저는 '부과'가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률적 용어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표현을 동일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 심사에서 모두 650점 이상을 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약식심사를 했음에도 심사위원들이 주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LG헬로비전은 IPTV와 M&A를 했다는 점에서 이미 재허가를 받은 SKB와 유사성이 큼니다. 따라서 SKB 합병 시 부과된 사항 가운데 LG헬로비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성, 협력업체 및 선거 관련 사항들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한 것은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프로그램 공급계약이나 지역채널 광역화와 관련해 다른 MSO 재허가 때 공통으로 부과된 조건과 동일하게 LG헬로비전에도 부과해서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부 구역에서 시청자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공통조건으로 시청자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유관단체로 재허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LG헬로비전이 전국사업자인 LGU+가 최대주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서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에서 운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심의와 관련된 특별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지역성 제고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등과의 상생을 위한 조건, 또 소외계층 지원 등 권고사항들도 적절한 내용들을 잘 담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과 사무처 수정(안)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허 위원님이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36-166)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등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해 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3> 추진 경과는 3월 18일 위원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조화를 했고 신설 규제가 없어서 규제심사는 면제되었습니다. <4>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이관 관련 규정 삭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 과징금 산정기준 등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통위 존치 업무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본인확인기관 및 앱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 삭제에 따른 체계정비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광고성 정보전송, 즉 스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대응센터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시 정보통신망법상 지정 간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속기관 위임과 관련하여 현재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수행 중인 불법스팸 관련 업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으로 3월 31일 입법예고 후 신설된 환급가산금 조항이 있어, 개인정보 업무 이관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은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올해 8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건인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었던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했던 개인정보 이슈들이 이관되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본인확인이나 앱접근권한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여전히 방통위에 남아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사무소 위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소관 사항에 대해 사무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도 당부드립니다. 안건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개보위 이관, 그리고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 근거 신설 등 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위임 근거가 없어진 조항들을 삭제하고 본인확인기관과 앱 접근권한 등 망법에 남아 있는 조문 가운데 개인정보의 규정 삭제에 따른 내용과 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을 규정한 제66조는 삭제가 되고, 제66조의2의 광고성 정보전송 고충처리 및 상담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이 계속 수행하도록 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맞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모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과 또 법체계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모두 합당하다고 봅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안건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방통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향후 업무 이관과 또 인사이동 등으로 우리 사무처 분위기가 다소간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무처는 존치된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36-167)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기반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방송법상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현행 방송법시행령 기준금액과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69가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방송법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방송법에서 일률적으로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69가지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액을 현 시행령의 기준금액과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1,000만원부터 3,000만원 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자 하는 안건인데, 과태료의 상한액 차등화가 법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반영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과 시행령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법과 시행령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실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법제처가 과태료 금액에 대한 각 부처 소관 법률 정비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방송법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법 위반 행위별로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방송법은 69가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액만을 일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6가지로 범주화하고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4단계로 구분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폐회 】